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1. 13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1. 1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0. 1.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가. 개정이유

-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부천시건축위원회의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심의권한 삭제로 별도의 심의기구 설치 필요성이 대두
- 미술장식품 설치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전문 예술인이 다수 참여하는 심의를 통하여 설치작품에 대한 예술성 제고
-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독립심의기구 구성으로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확충에 관한 효율성 제고

나. 주요골자

- 부천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구성
 - 현행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심의권한을 부천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로 대체(안 제7조제1항)
 - 건축, 도시설계, 회화, 조경, 조형예술 등 전문가 포함 13명 이내(안 제9조제1항)
-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제출기한의 구체적 명시(안 제2조제2항)
 -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시 제출토록한 현행 규정을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6호
의결년월일	2000. 1. 21 (제76회)

제출년월일 : 2000. 1. 1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부천시건축위원회의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심의권한 삭제로 별도의 심의 기구 설치 필요성이 대두
- 미술장식품 설치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전문 예술인이 다수 참여하는 심의를 통하여 설치작품에 대한 예술성 제고
-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독립심의기구 구성으로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확충에 관한 효율성 제고

[] 주요골자

- 부천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구성
 - 현행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심의권한을 부천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로 대체(안 제7조제1항)
 - 건축, 도시설계, 회화, 조경, 조형예술 등 전문가 포함 13명 이내(안 제9조제1항)
-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제출기한의 구체적 명시(안 제2조제2항)
 -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시 제출토록한 현행 규정을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대상대상 건축물) 시장이 법제9조제2항 및 영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

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제3조(미술장식품의 설치) ①시장은 영제24조제1항 및 영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 별지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 ①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기증품이나 소장품을 미술장식품으로 설치할 경우 그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부천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①영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100분의 1
2. 공동주택(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000분의 1 이상

②제1항의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며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표준건축비가 고시되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 금액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영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 등 미술장식품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부천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타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인정하는 현상공모에 당선된 미술품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품의 예술성, 공공성, 전시성, 안전성 및 보존성
2. 작품의 설치규모 및 설치위치
3. 작품의 설치계약금액 적정여부
4. 작품의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성 및 연계성
5. 기타 미술장식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업무 담당과장과 관내 거주 또는 전문분야에 활동 중인 건축, 도시설계, 회화, 조경, 전시기획,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부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신청서 접수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발족 이전까지 접수되는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는 부천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